
2018년 3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문호

목 차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 가. 총회(대의원회)
 -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18.02.02.	81명	제57기(2017년) 결산보고서 및 잉여금처분, 정관 일부개정,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모범안 등) 일부개정, 안동라이스센터 농협양곡(주) 현물출자 보고, 비상임(여성)이사 당선인 결정 보고, 비상임이사 선출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18.01.05	13명	2018년 사업준비금 적립 및 이용고배당 적용기준 결정, 제규정(예) 일부 개정, 정관 일부개정 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협의, 임원 선거일 결정
18.01.23.	11명	제57기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 심의, 제규정(예) 개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변경, 사업이용권 지원기준 결정, 외부회계감사 보고
18.02.05.	12명	조합원의 자격심사 가입승낙 및 탈퇴 지분환급 승인, 경제사업 여신거래약정 한도 책정
18.03.08.	12명	조합원의 자격심사 가입승낙 및 탈퇴 지분환급 승인,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선임이사 선정, 상임이사 성과평가 시 다면평가자 결정, 가지급금 처리 승인, 임원의 자기거래 승인, 2017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보고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 소 (또는 위치)	전화번호
본 점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054-858-7101
풍 천 지 점	안동시 풍천면 지풍로 1487-7	054-853-2772
기 산 지 점	안동시 풍천면 기산구장길 97	054-841-6823
회 곡 지 점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699	054-853-0105
어 담 지 점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348	054-841-9256
신도청지점	안동시 풍천면 풍요5길 30-5	054-859-7701
농산물공판장<간>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31	054-842-7001
풍산김치공장	안동시 풍산읍 미내길 127-4	054-858-8232
영농지원센터	안동시 풍산읍 장터2길 6-8	054-858-7104

나. 인원 현황

구 분		2017년 12월(A)	2018년 3월(B)	증감(B-A)
임 원	조합장	1(0)	1(0)	-
	이 사	10(1)	10(1)	-
	감 사	2(0)	2(0)	-
직 원	지도·경제	69	63	△6
	신 용	36	37	1
김치공장 종업원		125	129	4
기간제 근로자		2	5	3
합 계		245	247	2
조 합 원		3,532	3,533	1

주) ()는 상임임원수, 이사는 사외이사 1명 포함임.

3. 정관변경 사항

※ 2018년 2월 2일부터 개정 · 시행된 정관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정관 전문은 서안동농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u>농협은행</u>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 ----- <u>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u>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u>농협경제지주회사</u> 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 ----- <u>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 ----- -----.
1. <u>다른 조합 및 중앙회</u> 와의 공동사업	1. <u>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u>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u>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u> 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u>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u> ----- -----.
제10조(가입) ① (생 략)	제10조(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② ----- ----- -----.

현행	개정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 ---- <u>생년월일</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탈퇴) ① (생략)	제11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금지산선고를</u> 받은 경우	4. <u>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설>	<p>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p> <p>2. 영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p> <p>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4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현행	개정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제명)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p>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p> <p>다.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p>
2·3. (생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② (생략)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③ 약정조합원의 <u>책임</u>,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 <u>범위, 교육, 책임</u> ----- ----- ----- -----.</p>
<p><신설></p>	<p>④ <u>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생략)</p>	<p>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p>	<p>② ----- ----- -----.</p>
<p>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p>	<p>1. ----- ----- <u>생년월일</u> ----- -----</p>
<p>2. ~ 5. (생략)</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제11조 및 제12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③ <u>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u></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u>중앙회는 우선출자 발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제21조(우선출자) ① ----- ----- ----- ----- ----- <u>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u></p>
<p>② ~ ⑨ (생략)</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제46조(대의원회) ① ~ ②, ④ ~ ⑨ (생략)</p>	<p>제46조(대의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회별 조합원 수 증가에 의거 전년도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해당 영농회는 대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하며, 아래의 확정 영농회 대의원 수 중 행정구역개편 또는 조합원 수의 감소 등으로 80명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명으로 선출한다.(영농회별 대의원 수는 최대 2명 이내로 하며,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은 제외)</p>	<p>③ -----,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영농회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며, 영농회별 조합원 수 증가에 의거 대의원 임기만료일 직전년도말 기준 조합원 수가 85명 이상인 영농회는 2명을 선출하며, 85명 미만인 영농회는 1명을 선출한다.(여성대의원 선출 구역 및 대의원수는 제46조제3항에57호에 의한다.)</p>
<p>④ ~ ⑨ (생략)</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⑩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p>	<p>⑩ 대의원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으로 하고, 제2항 중 “각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p>
<p>제5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9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비상임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8명, 사외이사 1명) ② 제1항의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 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③(생략)</p>	<p>제5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 상임이사 : 1명 3. 조합원인 이사 : 8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 1명 5. 감사 : 2명 ②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 사업을 이용한 금액 : (1,350)만원 이상 나·다. (생략)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u>경제사업 (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400)만원 이상</u> 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u>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400)만원 이상</u> 다·라(현행 나 및 다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0(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의10(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u>행위</u>	2. ----- ----- ----- - <u>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4(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u>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할 수 없다.</u>	제77조의14(사위투표금지) ----- ----- -----투표하거나 <u>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투표하게 할 수 없다.</u>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u>제1관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u>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u>제1관 조합원인 이사</u>
제101조의2(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u>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단 신설></u>	제101조의2(선거운동) ① ----- <u>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 . 이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u>
<신설>	<u>1. 선거공보의 배부</u>
<신설>	<u>2.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u>③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u>

현행	개정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 ----- -----.
1. 조합,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 <u>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u> ----- -----
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 제38조에 따른 <u>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u>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 ----- -----.
1. <u>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감사·회계·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서 신설></u>	1. <u>조합 또는 연합회</u> ----- ----- ----- <u>다만, 우리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중앙회,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감사·회계·금융·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3. <u>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u> ----- 「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 제 38조에 따른 <u>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u>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 또는 우리 조합 자회사의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의 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삭제>
4.·5. (생략)	3.·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현행	개정
<p>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대의원은 <u>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 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u></p>	<p>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 <u>선거일공고일 현재</u> ----- ----- ----- ----- -----.</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p>	<p>② ----- -----.</p>
<p>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u>제4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u>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u>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 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u></p>	<p>1. ----- <u>제3호</u> ----- ----- <u>사람</u> . ----- ----- ----- <u>제3호</u> ----- ----- -----.</p>
<p>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0호 해당 좌수의 100분의 50])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p>	<p>2. ----- ----- -----</p>
<p>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p>	<p>3. ----- ----- ----- ----- -----</p>

현행	개정
<p>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u>경제</u> 사업을 이용한 금액 : [정관 제56조(임원결격사유)제1항 제12호 가목 사업이용실적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p>	<p>가. ----- <u>경제</u> 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 -----: [정관 제56조(임원결격사유)제1항 제12호 가목 사업이용실적(제56조제1항제12호 가목 <u>및 나목 금액의 합계액</u>을 말한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p>
<p>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u>예·적금</u>의 평균잔액 : [정관 제56조(임원결격사유)제1항 제12호 나목 사업이용실적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p>	<p>나. ----- ----- <u>예금·적금</u>----- : [정관 제56조(임원결격사유)제1항 제12호 다목 사업이용실적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p>
<p>다. (생략)</p>	<p>다. (현행과 같음)</p>
<p>제131조(선거방법) ① (생략)</p>	<p>제131조(선거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투표는 <u>위원회</u>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 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p>	<p>② ----- <u>조합장 또는 위원회</u>----- -----. -----.</p>
<p>③·④·⑤·⑥ (생략)</p>	<p>③·④·⑤·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항·제5항, 제76조, 제78조제2항, 제98조의2제2항·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p>	<p>제137조(준용규정) ----- ----- ----- ----- <u>제101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6항</u> ----- ----- ----- ----- ----- ----- ----- -----</p>
<p>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 ③ (생략)</p>	<p>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u></p>	<p>④ <u>조합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139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 ③ (생략)</p>	<p>제139조(<u>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조합장은 3월말·6월말·9월말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한다.</u></p>	<p><u><삭 제></u></p>
<p>⑤ <u>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u></p>	<p><u><삭 제></u></p>

현행	개정
<p>⑥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삭 제></p>
<p>⑦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을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삭 제></p>
<p>⑧ 조합원은 제6항·제7항 및 제13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⑨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p>	<p><삭 제></p>
<p>⑩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9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
<p><u><신 설></u></p>	<p>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 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 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조합원은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p> <p>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현행	개정
	<p>⑥ 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p>
<p>제143조(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공고 등)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3조(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공고 등) ①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p>	<p>2. ----- 경영상태 및 제138조 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별표> (주) 1. 생략 2. 동시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함</p>	<p><별표> (주) 1. 생략 2. 「<u>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u>」 <u>에 따른 조합장선거</u> ----- -----</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한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상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 제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0)만원 이상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금년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교환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발행해 상반기에 1인당 15만원씩 총5억2,98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연초부터 봄배추 재배 기술교육, 안동브랜드쌀·수출쌀단지 재배기술교육, 고추재배기술교육 등의 각종 농작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까지 멜론·양파·가을배추 재배기술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추·생강 등 종자대금 지원,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 농민신문 구독료 일부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금 일부지원, 면세유 취급수수료 지원 등의 환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경제(유통)사업

3월말 기준 우리농협 경제사업 현황은 구매, 판매, 농산물공판장, 하나로마트, 풍산김치사업 등이며, 사업실적으로는 구매사업 52억원, 판매사업 73억원, 농산물공판장 53억원, 하나로마트 6억원, 풍산김치 26억원 등 총 21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풍산김치공장은 지난해부터 CJ제일제당과 협의하여, 올해 3월부터 절임배추 판매를 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인 영업마케팅으로 김치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우리농협 경제사업은 조합원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사업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신용사업은 우리농협의 주 수익 사업이며, 3월말 현재 상호금융예수금 잔액 3,260억원, 상호금융예수금 평잔 3,365억원, 상호금융대출금 잔액 2,911억원, 상호금융대출금 평잔 2,949억원, 보험료 잔액 3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8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161,144	21,022	13.0	29,143	△8,121	△27.87	
판 매	101,840	12,490	12.3	14,765	△2,275	△15.41	
구 매	30,847	5,209	16.9	5,911	△702	△11.88	
마 트	3,000	623	20.8	676	△53	△7.84	
가 공	23,160	2,341	10.1	7,469	△5,128	△68.66	
기 타	2,297	359	15.6	322	37	11.49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421,500	326,019	7.2	318,626	7,393	2.32
	평잔	387,000	336,483	30.0	314,884	21,599	6.86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362,000	291,061	△15.6	300,623	△9,562	△3.18
	평잔	335,000	294,950	△1.0	295,364	△414	△0.14
보험(공제)료	15,533	3,690	23.8	3,969	△279	△7.03	

※ 상호금융대출금(예수금) 잔액 및 평잔 달성률은 연간계획 및 기준일 실적에서 전년동기 실적을 각각 차감한 후 계산함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동자산	22,697	유동부채	41,203
현금	2,149	외상매입금	993
외상매출금	3,285	단기차입금	32,822
재고, 생물자산	7,768	기타유동부채	7,388
기타유동자산	9,495	금융업예수금	326,019
금융업예치금	52,638	금융업차입금	11,309
금융업대출채권	301,867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
(대손충당금)	11,412	비유동부채	5,145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	장기차입금	4,117
비유동자산	67,453	기타비유동부채	1,028
투자자산	21,413	부채합계	383,676
유형자산	46,031	출자금	16,686
무형자산	0	자본잉여금	1,969
기타비유동자산	9	자본조정	-3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970
		이익잉여금	7,979
		자본합계	49,567
자산 총계	433,243	부채와자본 총계	433,243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3월말 (A)	'18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22,784	14,506	△8,278
영업비용	20,188	11,631	△8,557
매출총이익	2,596	2,875	279
신용사업	2,088	2,542	454
경제사업	508	333	△175
판매비와관리비	2,930	2,817	△113
영업이익	-334	58	392
교육지원사업비	487	940	453
영업외손익	205	527	322
법인세차감전손익	-616	-355	261
법인세비용	1	0	△1
당기순이익	-617	-355	262